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이 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약칭 "TS"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다.

- ②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본부 등의 분사무소 또는 연구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분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규정의 제정 등)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직제규정」의 총정원, 직급별 정원 또는 기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 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③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노동이사로 하며, 노동이사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03.03.〉

제6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임명하다.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기획재정 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 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유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혐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03.>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위의 정도가 「인사규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경우
-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개정 2023.03.03.>
- 4.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문책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 5.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개정 2023.03.03.>

[전문신설 2022.02.14.]

제9조의3(임원의 징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 정직, 견책 또는 그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그 밖에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 6.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한 경우
- 7. 채용비위
- 8.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
- ② 임원의 징계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23.03.03.]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1조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③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이사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사고 시는 직제의 순위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고 미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에 관한 임면·복무·신분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 이사장의 보수기준은 공단의 경영성과 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④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 ⑤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은 공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 5.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8.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정」, 「예산회계 규정」, 「복리후생규정」, 「이사회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0.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1.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사항
- 12.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선임 및 위원 수에 관한 사항
- 13.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14. 잉여금의 처분
- 15.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 16. 임원 및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의 해임, 정직, 견책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3.03.03.>
- 17. 법 및 영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신설 2022.02.14.>
- 1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02.14.>
- ② 삭제 <2022.02.14.>
- ③ 제1항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도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보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서면의결)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의 비치)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장 해임 건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25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 · 연구
- 7.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 8. 자동차검사 및 배출가스정밀검사에 관한 업무
- 9.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12.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사업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공단은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조사·시험·연구·점검 및 진단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하여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경영목표)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및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경영목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및 출연재산
- 2.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게 하거나 양여한 국유 재산
- 3. 그 밖에 공단이 취득한 재산

제2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운영재원) 공단의 운영재원은 법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수입금, 차입금, 자산 운영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출연금의 신청) 공단이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31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 격)
-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사용료 등의 정수) 공단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①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는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 익계산서와 자금계획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예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8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때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에서 감액하여 정리하고 그래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은 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관

제39조(부설기관의 설치 등) ① 공단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설기관으

- 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안전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안전연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및 제작결함 조사ㆍ연구
-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안전도 평가 · 연구
- 3.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국외사무소 운영
- 4. 자동차 연료소비율, 온실가스 및 실내공기질 조사 · 연구개발
- 5.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6. 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7.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 및 안전기준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8.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
- 9. 자동차 정책지워 및 제도연구
- 10.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자동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1.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위ㆍ수탁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업무 및 그 밖에 안전연구원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0조(안전연구원 원장) ① 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원장은 안전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 ④ 원장의 임기는 공단의 상임이사에 준한다. 다만, 원장의 징계는 정관 제 9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3.03.03.>

제41조(안전연구원 운영규정) 안전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원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보급되는 일 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분사무소 등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

제43조(경영공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6. 경영실적 평가 결과
- 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 8. 감사의 감사보고서
- 9.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공단이 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야 한다.
-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게시 비치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 다)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 3.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비치
-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고문 등)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46조(고객헌장) ① 공단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 1.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임무
- 2. 공단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의 수준
- 3. 서비스 이행기준의 위반에 대한 시정 및 배상조치
- 4. 그 밖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② 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하다.

-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 폐지되었을 때
- 2. 정부가 공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 ② 공단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개정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연구원 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의 안전연구원 원장에게도 적용되며, 그 임기는 최초 임명일인 2018년 7월 16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2의 신설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된 임원

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3.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3의 신설 규정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임용된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